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4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최보윤·임종득·백종헌

박성민 · 박형수 · 김미애

김선교 · 김상훈 · 서천호

박대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 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 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 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 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 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둠(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 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조사, 교육 및 신분조회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3항제2호및 제22조의3제1항 등).
-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 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 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 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을 "다음 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 대행위자(이하"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제16조제3항 단서 중 "아동학대행위자가"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

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견 및 보호"를 "발견, 보호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 례판단위원회를 두며, 아동학대사례판단 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를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 자"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를 한"을 "조사 및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완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 대행위자"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 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2항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하여 입력된 정보의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로,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대상자"로 한다.

제75조제3항제1호의5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
	<u>자"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u>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
	<u>다.</u>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
시・도지사, <u>시장・군수・구청</u>	시장·군수·구청장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u> </u>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	

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 항으로 본다.

- 1. ~ 8. (생략)
- ②·③ (생 략)
-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생 전략)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 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시	선>
\ \ \ \ \ \ \ \ \ \ \ \ \ \ \ \ \ \ \	

<u>.</u>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현행
과 같음)
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당하는</u>
1 「시도관에비키시 티비 도세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
대행위자"라 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신 설>

- ⑥ ~ ① (생 략)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생 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 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 · 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 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 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 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담 • 교육 •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④·⑤ (생 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0, 10 1 11 11 1 1 1 1 1 1 1 1 1 1 1 1 1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
<u>고 있는 자</u>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학대행위자 또
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u>.</u>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 「아돗한대번집의 처벌 등에

의무) ①・② (생 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u>발견</u>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및 지원-----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피해아동, <u>피해아동의 가족</u>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 담・조사

<신 설>

3. (생략) ④·⑤ (생 략) <신 설>

-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 -----발견, 보
- 1. (현행과 같음)
-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

- 3.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판단 (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 라 한다).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 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아 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며, 아동학대사례판단 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아동 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u>⑥</u>·<u>⑦</u> (생 략)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 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 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 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 략)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 동에 대한 <u>조사를 한</u>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 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 4.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u>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u>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 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⑤ · ⑥ (생 략)
-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제 및 제공) ① (생 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

·. <u>다만</u>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
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u>피해아동,</u>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
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⑤·⑥ (현행과 같음)
세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 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④·⑤ (생 략)

제29조의2(<u>아동학대행위자</u>에 대 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
<u> 상자</u>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관
리대상자에 관하여 입력된 정
보의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u>피해아동의 가</u>
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
대사례관리대상자
1.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세29조의2(<u>아동학대행위자등</u> 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전문기관의 장은 <u>아동학대행위</u> 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u>아동</u>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 야 한다.
- ③ (생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7

- ① (생 략)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2. (생략)
- 3. 피해아동, <u>피해아동의 가족</u> <u>및 아동학대행위자</u>를 위한 상 담·치료 및 교육

4. ~ 7. (생략)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u>아동학대행</u>
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
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
행위자등"이라 한다)
아동학대행위자등은
②
아동
학대행위자등은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2
1. • 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
<u> 사례대상자</u>
4. ~ 7.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4. (생 략)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아니한 <u>아동학대행위자</u>

2. ~ 4. (생 략)

④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u>아동학대행위자등</u>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